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9. 8. 27.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1. 제 출 자:** 성동구청장

## 2.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수수료 종류 및 금액을 현행화하며, 유행성 질병 발생에 적극 대응하고자 검사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1조~제3조)
- 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를 폐지하고 수수료 면제 규정 등 삭제(안 제2조~제4조)
- 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치과진료 열구전색진료비 삭제(안 제2조)
- 라. 「만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이 2016년도 서울특별시 일몰사업으로 종료되어 관련 규정 삭제(안 제3조)
- 마. 수수료 종류 및 금액을 현행화하고, 검사 항목에 면역검사 등 항목 신설(안 별표)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1)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2
- 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 6)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9. 7. 5. ~ 7.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및 검사 수수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안 제2조제2항제3호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는,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게 됨에 따라 조문 및 별표에서 삭제하고, 이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면제 규정인 안 제3조제1항과 항결핵제 보급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는 안 제4조 또한 삭제하였으며

- 안 제2조제2항제6호 치과진료 열구전색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조문 및 별표에서 삭제하고 안 제3조제3항은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삭제코자 하는 것임
  - 다음, 안 [별표]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으로 제목을 정비하고, 전체적으로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용어 정비, 신규 검사 항목 신설 등으로 수수료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음
  - 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항 검사항목에 ‘면역검사 등’ 항목 신설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고 예상치 못한 감염병 발생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여겨지며 검사 수수료 책정시에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검사의 질 향상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 검토가 요구됨
-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서비스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신설하고 의료수가를 현실화함으로써 국민에게 다양한 검진 혜택을 부여코자 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 등 개정사항이 시행된 지 상당기간 경과하였음에도 변경내역을 적기에 반영하지 않은 점은 보건 행정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향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임